통일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11. 2.(월)

정부, 전후납북자 추가 인정, 분단으로 인한 피해와 아픔 보듬는다

- 전후납북자 규모 조정(516명 → 519명), 납북피해자 지원 및 가족 아픔 치유 노력 지속
- 대영호 선원 3명 추가 인정 및 피해가족 대상 위로금 지급 결정

【관련 국정과제】116.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

□ 통일부는 「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약칭: 전후납북자법) 제6조에 따라 「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」를 개최하고, 전후납북자를 추가로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.

*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진행

□ 이번 결정으로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된 대영호 선원 조민철 氏(본명 조기원) 등 3명이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됐다.

o 이중 조민철 氏의 동생으로 확인된 분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여, 약 8,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.

※ 피해위로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 범위에서 월 최저 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 지급

o 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족 소재 파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정부는 분단으로 인해 오랜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,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.

o 앞으로도 남북대화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예정이다.

붙임 : 추가 인정 납북자 및 전후납북자 통계 현황 1부. 끝.

담당 부서	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	책임자	담당관	이창성 (02-2100-5910)
		담당자	서기관	안대영 (02-2100-591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추가 인정 납북자 및 전후납북자 통계 현황**

□ 추가 인정 전후납북자 명단

성명	성별	출생년도	본적	직업	납치일
조민철 (조기원)	남	1951년	전남 나주	어업 (대영호)	1973.11.24.
김양훈	남	1953년 (추정)	전남 이하 미상	어업 (대영호)	1973.11.24.
김동호	남	1956년 (추청)	미상	어업 (대영호)	1973.11.24.

□ 전후납북자 통계 현황('26.10.30. 현재)

○ 전후납북자 규모 조정: 기존 516명* → 변경 519명

* '11.10월 517명(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), '13년 1명 귀환 이후부터 516명 유지

○ 정전협정(1953.7.27.) 이후 총 **3,838명 납북**, 이중 3,319명 귀환(3,310명 북측 송환, 9명 탈북 귀환)하여, 현재 **북한 내 전후납북자**는 **519명**으로 추정

(단위: 명)

구 분		계	어선원	KAL기	군·경	기타
피랍		**3,838**	**3,732**	50	30	26
귀환	송환	3,310	3,263	39	-	8
	탈북	9	9	-	-	-
미귀환		**519**	**460**	11	30	18

* 귀환납북자 총 9명 중 5명 생존